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8 선고 2020나4649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8 선고 2020나4649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7 선고 2019가단40278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

피고, 항소인C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철

변론 종결2020. 10. 21.

판결 선고2020. 11. 18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7. 선고 2019가단40278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-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54,047,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5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항소취지 :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허일승

판사신한미

판사김우현